

2019년도 제8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(투자유치)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

2019년도 제8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(투자유치)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9년 9월 25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<재공고에 따른 안내사항>

-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재공고함
-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-63호에 따라 제8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응시를 갈음함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임용분야 주요업무
광 양 만 권 경 제 자 유 구 역 청 (투자유치2부)	투 자 유 치	일반임기제 (지방행정7급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식품의약 관련분야 기업유치 및 입주지원• 의료 및 의약품 제조업 투자유치• 수산분야 식품기업 발굴 및 유치• 투자대상기업 D/B 구축 및 동향 분석• 투자유치 대상기업 재무회계 분석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

2. 응시자격

가. 공통사항(면접시험 예정일 기준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주소지·성별·연령: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자)

나.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자격 요건
투자유치 (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) -지방행정7급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•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【관련분야】 투자유치 관련 기획, 전략, 경영, 마케팅, 영업 분야 【우대사항】 국내·외 공공기관 및 투자유치 전문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신규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, 중국어 통·번역 및 회화능력자</p>

※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3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4. 보수수준

- 가.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
- 나.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(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7급(상당)	60,139	42,713

※ 연봉외 급여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 및 일정

- 가. 시험방법

-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응시분야 관련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 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- 2차 시험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)
 -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▶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 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 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나. 시험일정

시험(재)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합격자발표
'19. 9. 25.(수)	'19. 10. 7.(월) ~ 10. 10.(목) (09:00~18:00)	서류전형 면접시험	'19. 10. 15.(화) '19. 10. 23.(수)	'19. 10. 16.(수) '19. 10. 25.(금)

※ 합격자 발표: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>)에 게시
 ※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: 별지1~9호(내려받아 사용)
- 나. 접수처: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행정동 8층)
- 다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 - 우)58564,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(전라남도청) 총무과 인재채용팀
-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우편접수시,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
7. 응시자 제출서류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
② 응시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: (7급) 7천원

※ 응시수수료는 **전라남도 수입증지**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시는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(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)

③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
④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
⑥ 최종학교 학위증서(또는 졸업증명서) 1부

- 박사학위의 경우, 석 ·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
- 석사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
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
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
“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6호 서식)” 추가 제출

-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(週)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
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
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

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②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 발급) 1부(필수)

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 추가 제출

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
⑩ 자격(면허)증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⑪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(별지 제7호 서식)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1부

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제9호 서식) 1부

《응시자 유의사항》

-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)을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-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 사항

- 가.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.
- 라.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바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.
- 자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차.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**채용절차 관련 문의:**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 - ▶ **담당직무 관련 문의:**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(☎ 061-760-5063)

참고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투자유치(식품의료)	지방행정7급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라남도	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

주요업무	<input type="radio"/> 투자유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·의료 관련분야 기업유치 및 입주지원 - 의료 및 의약품 제조업 투자유치 - 수산분야 식품기업 발굴 및 유치 - 투자대상기업 D/B 구축 및 동향 분석 - 투자유치 대상기업 재무회계 분석
------	--

필요역량	<input type="radio"/>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<input type="radio"/>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<input type="radio"/>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-

필요지식	<input type="radio"/> 경제, 재무·회계, 기업경영, 관련 분야 업종현황 관련 지식 <input type="radio"/> 국·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프로세스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<input type="radio"/> 글로벌 산업동향 및 투자유치 유망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
------	--
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 : 투자유치(식품의료)	
	경력	<input type="radio"/>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·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·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·외 공공기관, 민간 기업·단체·연구소에서 투자유치 관련 기획, 전략, 경영, 마케팅, 영업 분야 등 실무경력
우대요건	<input type="radio"/> 국내·외 공공기관 및 투자유치 전문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신규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 <input type="radio"/> 중국어 통·번역 및 회화능력자	